

2026년도 기술경영촉진 신규과제 공고

- 컴퍼니빌더 지원형,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-

2026년도 「기술경영촉진(컴퍼니빌더 지원형,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)」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병국

1. 사업 목적

- (컴퍼니빌더 지원형)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·출연연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를 통한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 활성화 지원
- (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) 공공기술 발굴부터 창업·보육, 후속투자 등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학·출연연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를 종합전문회사*로 집중 육성

*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타 기관까지 지원이 가능한 기관

2. 지원 근거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,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- 「국정과제 28」(세계를 선도할 넥스트(NEXT) 전략기술 육성)

3. 지원 내용

□ 지원 기간 및 규모

- ('26년도 지원기간) '26.4월 ~ '26.12월 (9개월)

※ (총 지원기간) '26.4월 ~ '30.12월 (총 57개월 내외, 1단계 21개월 + 2단계 36개월)

○ ('26년도 지원규모) 총 120억원

사업명	과제 수	지원 예산	비고
컴퍼니빌더 지원형	10개	과제별 연 10억원 ('26년 7.5억원(9개월))	※ 기관부담금 확인 必
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	2개	과제별 연 30억원 ('26년 22.5억원(9개월)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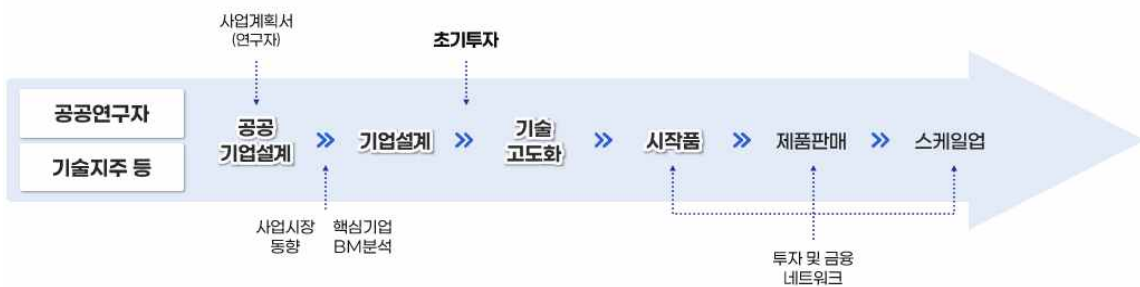
※ 지원 기간 및 지원 예산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 내용

○ (컴퍼니빌더 지원형)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R&D 중인 공공 기술을 중심으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초기창업·보육 지원 등 기획형 창업 촉진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

- (기획창업) 시장조사, 기술개발, 아이템 검증, 시제품 제작, 제품 개발 등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
- (투자연계)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 및 AC/VC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BM 기획·고도화, 초기투자금 유치 등 지원

< 컴퍼니빌더 지원형 수행 절차 예시 >



○ (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) 기관·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(공공·민간) 육성

- (거버넌스 개편^{대학})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*을 통해 기관 내외 분절·중복적 지원체계**를 해소하고 신속일관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 수행이 가능한 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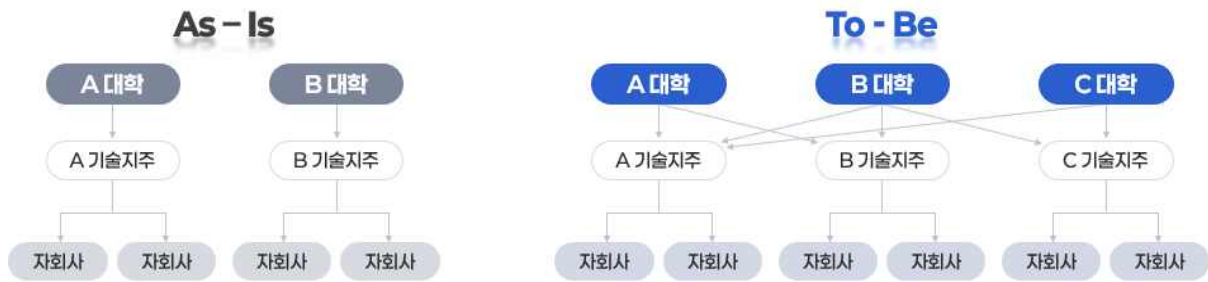
* 조직개편, 규정 개정 등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명확한 역할 정리(기관 자체 개편안 마련)

** 대학의 경우 기술지주회사, TLO, 창업지원단 등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역할 분리

- (전주기 지원^{대학·민간}) 대학·출연연의 우수 공공기술 발굴*, 창업·보육, 성장지원(후속투자 등) 및 관련 특허·법률 서비스 등 전주기 지원

* 해당 기관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他 대학·출연(연) 기술까지 적극 발굴

<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기술 발굴 예시 >



< 컴퍼니빌더 지원형,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비교 >

구분	컴퍼니빌더 지원형	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
중점 지원 방향	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 등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 활성화 지원	기관·기술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발굴과 창업·보육 및 후속 투자(직접투자·투자유치)까지 종합 추진
지원 내용	유망기술·창업자 발굴·보육을 통한 기획창업 위주 지원 · 기획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·운영 ·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· BM기획·고도화, 초기 투자유치 지원 등	공공기술 발굴부터 창업·투자 등 성장 지원까지 분절 없는 전주기 지원 ·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구축·운영(대학) ·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지원 프로그램 운영 · 창업·보육, 성장지원, 후속투자, 펀드조성, 특허·법률 서비스, IPO 등 지원 · 수익 창출에 따른 수익배분 및 재투자
지원 범위	해당 기관 보유 기술 위주 사업화 지원 추진	해당 기관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타 기관 기술까지 사업화 지원 추진

□ 신청자격

○ (컴퍼니빌더 지원형)

- (지원대상) 대학·출연연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

	공공		민간	합계	비고
	대학 (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)	출연연 (신기술창업전문회사)	AC		
지원(선정) 개수	6개	2개	2개	10개	※ 과제접수·선정·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- (지원자격)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(산학협력법 제36조의2), 신기술창업 전문회사(벤처기업법 제11조의2), AC(벤처투자법 제24조)

- ※ (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“대학”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
- ※ (신기술창업전문회사) 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제8조에 따른 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”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의 “과기특성화대학”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,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정
- ※ (민간 AC) 「벤처투자법」 제24조에 따른 기관

- (연구책임자) 사업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, 창업 기획·투자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경험·역량을 보유한 자

- (지원단위) 주관기관(기술지주, AC), 참여기관(기술지주, AC) 컨소시엄* 가능

*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시 필요

- (지원요건)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* 및 핵심 전담인력** 등

* 구체성·실효성 반영한 기획형 창업 성장지원 모델 제시 필요

** 기획창업 관련 역량·실적을 겸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필요

- (기관부담금)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(혁신법 시행령 제19조)

○ (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)

- (지원대상) 대학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

	공공	민간	합계	비고
	대학 (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)	AC		
지원(선정) 개수	1개	1개	2개	※ 과제접수 선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

- (지원자격)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(산학협력법 제36조의2), AC(벤처투자법 제24조)

※ (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“대학”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
※ (민간AC) 「벤처투자법」 제24조에 따른 기관

- (연구책임자) 사업 신청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, 창업·보육·펀드조성·IPO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경험·역량을 보유한 자

- (지원단위) 주관기관 단독

- (지원요건) 거버넌스 개편* (대학) 및 핵심 전담인력** 등

* 신속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조직 규정 등 거버넌스 제시 필요(대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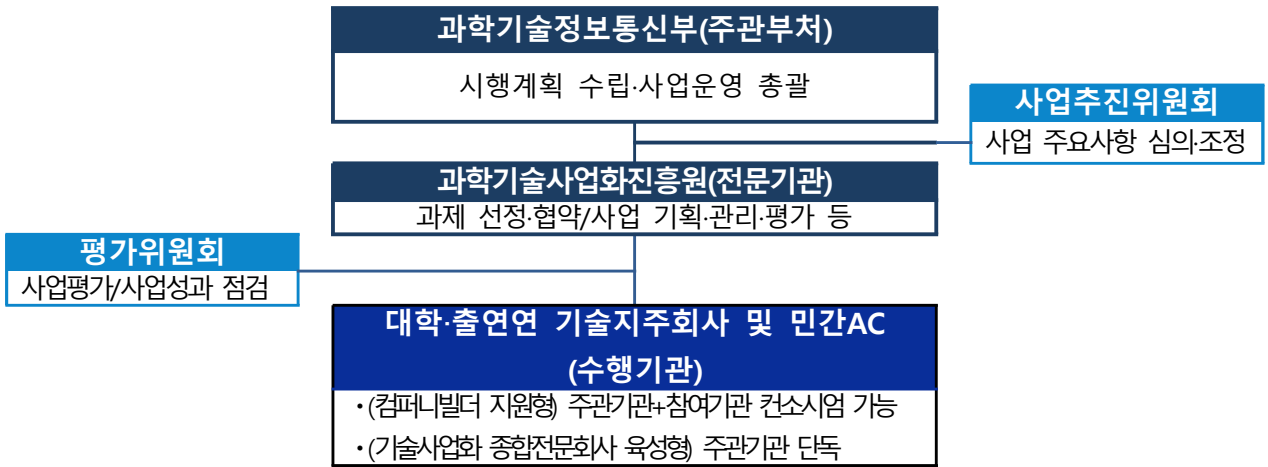
**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관련 전문역량·실적을 겸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필요

- (기관부담금)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(혁신법 시행령 제19조)

4. 추진체계

□ 추진체계도

○ (추진체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관부처),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(전문기관), 대학·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(수행기관)



○ (수행주체별 역할)

구분	주요 역할 및 기능
수행기관	< 컴퍼니빌더 지원형 : 대학·출연(연)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 등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획형 창업 플랫폼 구축·운영 ■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BM 기획·고도화, 초기투자금 유치 등 지원
	<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: 대학·출연(연) 기술지주회사, 민간 AC 등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신속·일관적인 기술사업화 활동 수행 ■ 대학·출연연 보유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

5. 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 절차

- (선정절차) 사전검토(전문기관) → 서면평가(1단계) → 대면평가(2단계) → 사업추진위원회 심의·확정(3단계) 순으로 진행
- (서면평가) 신청자격, 공고와의 부합성, 실적, 계획 검증 평가
 - *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로 대면평가 대상 선정(접수 경쟁률 2배수 미만 시 서면평가 생략이 가능하며, 상세 내용은 선정평가 계획안 수립 예정)
- (대면평가) 서면평가 통과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의 대면평가 실시

□ 평가 기준

- (컴퍼니빌더 지원형)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(50점),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(30점), 향후 운영계획(20점) 등 종합 검토

< 컴퍼니빌더 지원형 선정평가 지표(안) >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
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 (5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공기술 기반 투자 성과의 우수성(‘21~’25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접투자, 투자조합(GP) 출자 및 후속투자 등 실적 · 투자조합(GP) 결성(총액, 건수) 및 회수·재투자 실적 · 공공기술 사업화 목적 투자집행률* 등 질적 성과의 우수성 <p>* (공공기술 사업화 목적 투자집행 금액 / 총 투자금액) × 100%</p>	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창업기업 지원 활동의 질적 우수성 및 성과기여도(‘21~’25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 기관의 대표 사례(3~5개)를 기반으로 창업 및 성장 과정 점검 · 창업지원(공공기술발굴-기획-창업-초기투자)의 실적 · 기획형 창업 건수, 단계별 전환 성과 등 창업실행 역량의 우수성 · PoC, IP 전략, BM·IR 고도화 등 질적 성장지원의 우수성 및 실효성 · 창업기업 매출·고용·투자유치 등 후속 성장지원 성과 	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기관 보유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·운영성과(‘21~’25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지원 인프라·전담조직 등의 활용 역량 및 운영체계의 내실도 · 연구책임자, 기획전문가, 기술전문가 등 전담인력 현황, 경력 및 역할 · 산·학·연·금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의 확장성 및 지속성 	10
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획형 창업 성장지원 모델의 구체성 및 실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획형 창업지원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성 · 발굴-기획-검증-창업-투자 등 창업 프로세스 설계의 체계성 · BM·IR 고도화·시장검증·투자 연계 등 전문 네트워크 기반 실행전략의 실효성 ■ 전담조직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지속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핵심 전담인력 및 역할분담 계획의 구체성 · 전담조직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구조의 지속성 및 안정성 	30
향후 운영계획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혁신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장기 비전, KPI 설계, 전략의 구체성 및 혁신성 · 수행 의지 및 실행 약속의 명확성 	1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획창업 단계별 지원전략의 체계성 및 실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발굴-기획-창업-초기 투자 등 단계별 실행전략의 체계성 · 성과관리체계 및 전략의 실효성 	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핵심 전문인력 확보 및 자원 활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용체계의 실효성 · 내부(조직·공간·자금) 및 외부(산·학·연·금) 자원 연계 계획의 구체성 및 효율성 	5
합계		100

※ 평가계획 수립 시 상기 평가지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

※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 등 평가 항목은 '주관기관' 실적 기준으로 평가 예정

○ (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) 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(50점), 거버넌스 개편(30점), 향후 운영계획(20점) 등 종합 검토

<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선정평가 지표(안) >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			
공공연구성과 기반 지원 실적 (5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기술 기반 투자 성과의 우수성('21~'25년) 직접투자, 투자조합(GP) 출자 및 후속투자 등 실적 투자조합(GP) 결성(총액, 건수) 및 회수·재투자 등 실적 공공기술 사업화 목적 투자집행률* 등 질적 성과의 우수성 * (공공기술 사업화 목적 투자집행 금액 / 총 투자금액) × 100% 	20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 지원활동의 질적 우수성 및 성과기여도('21~'25년) ※ 지원기관의 대표 사례(3~5개)를 기반으로 창업 및 성장 과정 점검 예비창업자 발굴, 기술매칭, 창업실행 등 전주기 창업지원 체계의 우수성 창업기업의 매출·고용·투자유치·EXIT(IPO/M&A) 등 성과 창출의 우수성 PoC, IP 전략, BM·IR 고도화 등 질적 성장지원의 우수성 및 실효성 	20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기관 보유 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·운영성과('21~'25년) 기술사업화 전담조직, 창업지원 공간, 매칭자금 등 인프라 규모 및 활용 역량 연구책임자, 투자심사역, 박사급 등 전담인력 현황, 경력 및 역할 국내외 산·학·연·금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의 확장성 및 지속성 	10			
거버넌스 구축 (30점)	세부지표		대학	민간	30
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주회사 중심의 기술사업화 가능통합 및 권한 집중형 거버넌스 구축 기능 중복 해소 및 핵심 권한 집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정관내규위임규정 등 제도 개편의 내재화 및 지속 운영 가능성 	15	-	
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성 기술 발굴·창업보육·후속투자(직접투자·투자유치) 등 전주기 프로세스 설계의 체계성 대학·출연연·민간·산업계 등 다기관 협력 구조의 명확성 및 실행 가능성 	8	15	
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조직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지속성 핵심 전담인력 및 역할분담 계획의 구체성 전담조직의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구조의 지속성 및 안정성 	7	15	
	합 계		30	30	
향후 운영계획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혁신성 중장기 비전, KPI 설정 및 전략의 구체성 및 혁신성 수행 의지 및 실행 약속의 명확성 	10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주기 실행전략의 체계성 및 실효성 기술발굴·창업·보육·후속투자·회수 등 단계별 실행계획의 체계성 및 연계성 성과관리체계 및 전략의 실효성 	5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핵심 전문인력 확보 및 자원 활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 및 운용체계의 실효성 내부(조직·공간·자금) 및 외부(산·학·연·금) 자원 연계 계획의 구체성 및 효율성 	5			
합계		100			

※ 평가계획 수립 시 상기 평가지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

6. 사업 추진일정

사업 공고 및 접수 ('26.1월, 37일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공고(1월~) 및 신청서 접수(~2월)
선정평가 및 사업추진위원회 (~'26.4월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 심의(3월~) • 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(~4월)
사업 협약 ('26.4월 내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↔ 주관기관 협약 • 사업 개시(4.1.~) 및 사업비 교부
사업수행 ('26.4월 ~ '26.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제별 사업수행(1차년도)
진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진행사항 점검(진도점검/년 1회 내외)
사업비 집행 점검 (~'27.3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6년 사업비 집행 실적 점검 등

※ 상기 사업추진 일정,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7.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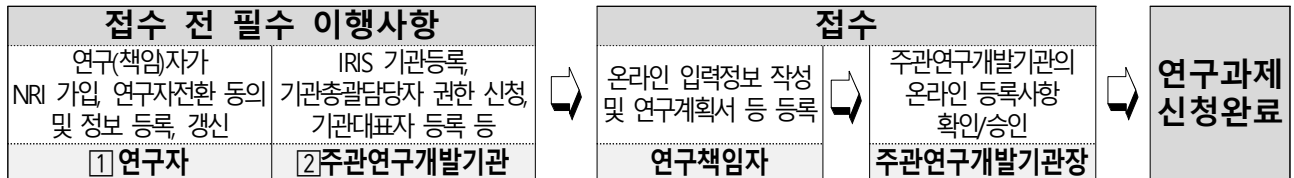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사업 공고기간	2026.1.19.(월) ~ 2026.2.24.(화) (37일 공고)
연구책임자 신청기간	2026.2.9.(월) 09:00 ~ 2026.2.24.(화) 14:00 (16일)
주관연구기관 검토/승인기간	2026.2.9.(월) 09:00 ~ 2026.2.24.(화) 14:00 (16일)
신청 절차	주관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사업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록완료 & 주관연구기관 검토/승인을 반드시 완료해야 동 사업 신청 최종 완료 (신청기간 이후 제출 건은 접수 처리 불가)

□ 신청절차

-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입력 정보 작성,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
- IRIS 사업신청 시뮬레이션 : IRIS접속 > 알림·고객 > 자료실 > IRIS사용매뉴얼 > 시뮬레이션(연습하기)



- 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-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제출서류 양식의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 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 - 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 -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 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 필수
- 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·승인을 완료하여야 함
 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

□ 신청관련 주의사항

- (연구책임자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사항,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 클릭
 - ※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 완료 필수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
 - 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- (기타)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
 - ※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'기관담당자 제출승인' 되어야 함

□ 제출서류 목록

※ 제출서류 누락 및 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연구기관(책임자)에게 있음

- (온라인 전산입력) 기본정보, 과제요약정보, 연구기관연구원 정보(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), 연구비 내역, 주요 연구수행실적(수행완료 과제, 수행 신청 중 과제) 등 정보입력(PART1_전산입력표지 및 요약문/PART3_연구개발계획서(본문2) 해당)
- (제출서류) 제출서류 1~10 등 IRIS시스템 업로드

순서	제출서류	제출대상		제출방법	
		주관	참여**	제출부수	제출양식
1	연구개발계획서(PART2_본문1) 1)	◎	-	1부	표준양식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◎	-	1부	표준양식
3	개인정보·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	◎	◎	1부	표준양식
4	신용정보 조회동의서	◎	◎	1부	표준양식
5	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	◎	◎	1부	표준양식
6	과제 수행책임자 제재정보 확인서(연구책임자 해당)	◎	-	1부	NTIS다운
7	기관 실적 확인서	◎	◎	1부	표준양식
8	기관 인력 요약서	◎	◎	1부	표준양식
9	사업신청시 체크리스트	◎	-	1부	표준양식
10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(공공기관 제출용)	◎	◎	1부	신용평가기관 다운로드

* NTIS사이트(www.ntis.go.kr)로그인> "MY제재조회"> "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또는 본인제재 확인서"

** 참여 : 컴퍼니빌더 지원형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참여기관에 해당

□ 문의처

구분	기관명	이름	전화번호	이메일
IRIS 문의	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(iris)	IRIS 고객센터	1877-2041	-
		※ 주관기관 승인문의는 소속 대학 기관 총괄 담당자 개별 문의		
사업 문의	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(사업화실)	김현철 책임	02-736-9284	tmc@compa.re.kr
		전창욱 연구원	02-736-9024	

1) 작성 분량은 핵심 내용 위주로 **30P 이내로** 작성, 기타 증빙자료는 별첨 활용(별첨은 작성 분량에 미포함 됨)

8. 사업 신청 유의 사항

□ 사업 신청 필수 요건

구분	필수 요건 이행 안내
필수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핵심 전담 인력) 역량과 실적을 겸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필요 ▪ (사업 운영 모델) 구체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모델 제시 필요 ※ (컴퍼니빌더 지원형)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(종합전문회사 육성형)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개편 등 ▪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(혁신법 시행령 제19조)

□ 주요사항 안내

구분	주요 사항 안내
중복신청 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신청·제출 단계) 컴퍼니빌더 및 종합전문회사 유형 중복신청 가능, 다만 중복신청 시 선정·협약을 희망하는 대상 과제의 우선순위 제출 필수 ▪ (선정·협약 단계) 컴퍼니빌더 및 종합전문회사 유형 중 1개 사업유형만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▪ (기타) 참여 인력 중복 참여 시, 인력의 확보·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에서 검토 예정
사업신청 제한사항 (접수마감일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관기관(대표자)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▪ 주관기관(대표자) 또는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회의, 법정 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
사업신청 미적용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책 5공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 ▪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제외 대상 사업(「혁신법」 제18조 제4항) ※ 연구개발성과 실시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혼동 금지
전산접수·서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s://www.iris.go.kr)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 불가능 ※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'기관담당자 제출승인' 되어야 함 ▪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(소속기관에 문의) ▪ 접수 완료 후 입력 정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※ 해당 기간 내에 '기관담당자 제출승인' 되지 않을 경우, 별도 구제 절차 없음 ▪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하므로, 작성·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▪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30쪽 이내 작성(별첨자료는 작성 분량에 미포함) ▪ 접수기간 내,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▪ 사업신청 시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 ▪ 주관·참여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서로 다른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야 함

□ 연구개발비 편성 안내

구분	안내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비 편성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2]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하여 연구비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컨소시엄 구성 시, 연구개발비는 주관, 참여 등 기관 구분하여 계상 및 관리 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산정 ■ 연구책임자는 예산 자율 편성하되, 사업 공동 활동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內 '종합사업 관리비'를 반영해야함(직접비의 3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 공동 활용 비용(협의회 구축, 성과 공유회 등)의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■ 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관리·집행하며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사업비 집행(회계처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,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부담금 산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기관부담금 매칭)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(혁신법 시행령 제19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중소기업 기준 예시> ※ (컴퍼니빌더) 총 연구비 13.4억원 = 국비 10억원 + 기관부담금 3.4억원(현물 3.06억 + 현금 0.34억) ※ (종합전문회사) 총 연구비 40억원 = 국비 30억 + 기관부담금 10억(현물 9억 + 현금 1억) < 참고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(혁신법 시행령 제19조) 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974 1409 1317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연구개발기관 유형</th> <th colspan="2">연구개발비 비율</th> <th rowspan="2">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</th> </tr> <tr> <th>정부지원</th> <th>기관부담연구개발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영리기관</td> <td>100% 이하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</td> <td>75% 이하</td> <td>25% 이상</td> <td>1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초기 중견기업*</td> <td>75% 이하</td> <td>25% 이상</td> <td>1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중견기업</td> <td>70% 이하</td> <td>30% 이상</td> <td>13% 이상</td> </tr> <tr> <td>공기업·대기업</td> <td>50% 이하</td> <td>50% 이상</td> <td>15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</p>	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	정부지원	기관부담연구개발비	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	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초기 중견기업*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	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
연구개발기관 유형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	정부지원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영리기관	100% 이하	-	-				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초기 중견기업*	75% 이하	25% 이상	1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중견기업	70% 이하	30% 이상	13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공기업·대기업	50% 이하	50% 이상	1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장비 도입 시 예산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장비(3천만원 이상) 도입 계획 있는 경우, 연구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 심의 요청서' 작성·첨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~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 ※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(과기부)에서 심의 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